



V. 대 만

1. 진입장벽 특징 • 273
2. 주요 진입장벽 • 273
3. 진입장벽 피해사례 • 282
4. 해소방안 및 향후전망 • 284

1. 진입장벽 특징

- 대만은 WTO 회원국으로 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만의 독특한 수입규제는 없음
- 식품에 대한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식품의 현지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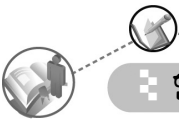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2. 주요 진입장벽

가. 수입쿼터 제도를 이용한 수입규제

- 대만은 WTO 가입을 위한 협상시 총 24품목의 농산물(현재 20품목으로 축소됨)에 대하여 수입쿼터 발급을 통하여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만은행에 쿼터제 분배 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 쿼터제 적용 대상국가는 WTO 회원국으로 대만 동식물검역 및 수입 관련 규정에 부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함
- 수입쿼터 신청전 아래의 관련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확인 필요

(1) 행정원 동식물검역국(전화 : 886-2-2343-1448)

-수입물품 원산국 및 원산지가 역병발생 지역 및 수입가능 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상품이 역병발생 국가제품이거나 동식물 검역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수입신청 불가

(2) 경제부 국제무역국(전화 : 886-2-2351-0271)

-중국산 쿼터분배 물품에 대하여 WTO 가입이후 수입규정은 경제부 공고를 위주로 함

(3) 재정부 관세총국(전화 : 886-2550-5500)

-수입물품 통관 및 수입 심사 관련 규정 확인

■ 수입쿼터 신청자격

- 대만 국제무역국에서 등록된 모든 수출입업체에 동일한 자격 부여

■ 분배방식

(1) 先신청 先분배

- 품목 : A.닭고기, B.돼지복부육, C.돼지잡육, D.가금류잡육, E.녹용, F.동양배, G.바나나(2005년 1월 1일부터 A.닭고기, B.돼지복부육, C.돼지잡육 취소됨)
- WTO 가입전 2년간 선신청 선분배 방식의 쿼터제를 실시하고 2년 후 정식 쿼터분배를 시행하였는데, 각 신청자의 수입 쿼터량 계산방식은 전 2년간 실제 수입 실적의 평균 수량으로 분배
- 신청 업체는 아래의 자료를 신청기간 내 대만은행 무역부에 제출
 - 「수입 쿼터 신청서」
 - 수출입 업체 등록카드 혹은 국제무역국의 업체 기본자료표
 - 사업자등본 복사본
 - 최소신청 단위당 수수료(NT\$1,000)우편 송금 영수증 원본



(2) 수입권한 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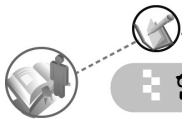
- 품목 : H.팥, I.액체유제품, J.땅콩, K.마늘, L.건조표고버섯, M.건조원추리, N.코코넛, O.빈랑, P.파인애플, Q.망고, R.유자, S.감, T.용안, U.당, V.청어, W.전갱이, X.정어리, Y.식용미 (2005년 2월 7일부터 U.설탕을 수입 쿼터제 대상 항목에서 삭제, 2008년 1월1일부터 S, V, W, X 4개 항목 제외)
- 쿼터 분배는 참가자의 수입 권리금액 고저에 따라 순서별 낙찰결정

■ 쌀 수입쿼터 제도

- 대만이 WTO에 가입한 후 수입쌀 쿼터량은 총 144,720톤으로 그 중에서 65%인 94,068톤 쿼터량은 정부가 수입
- 나머지 35%인 50,652톤은 민간업체가 쿼터량을 분배 받은 후에, 자체적으로 물품 공급원을 찾고 집적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

■ 쿼터 신청수량 및 보증금

- 각 품목별 최저수량에 따라(녹용 50kg, 동양배 20톤) 분리신청 가능
- 최초로 쿼터를 할당받은 업체는 할당받은 당년 6월 1일 이전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쿼터 재분배 시 할당받은 업체는 당년 11월 30일 전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이후 쿼터신청 자격을 상실함
- 보증금금액 : (E)녹용 : 1kg당 NT\$105, (F)동양배 : 1톤당 NT\$4,100, (G)바나나 : 1톤당 NT\$1,150(보증금은 쿼터량 수입이행 완료후 환급)



■ 쿼터제 농산물 쿼터수량, 관세율 및 수입기간

구분	쿼터량(톤)			쿼터량 수입기간	수입 관세율 (쿼터물량)	수입 관세율 (쿼터물량외)
쌀	144,720 (94,068 정부미)	50,652 (민간미)	15,000	1월1일~9월15일	0%~25%	45원/kg (식용) 49원/kg (쌀 제품)
			20,652	4월1일~9월15일		
			15,000	6월1일~9월15일		
녹용	5실적(先신청 先분배)			1월1일~9월1일	22.5%	620%
동양 배	9,800실적(先신청先분배)			1월1일~9월1일	18%	49원/kg
바나나	13,338실적 (先신청 先분배)			1월1일~9월1일	12.5%	113.6%
팥	2,500			1월1일~9월1일	22.5%	22원/kg
액체 유제품	21,298			1월1일~9월1일	15%	15.6원/kg
땅콩	5,235			1월1일~9월1일	25%	42원/kg (껍질 있음) 64원/kg (껍질 없음) 338%(땅콩유)
마늘	3,520			10월1일~12월31일	0%(경작용) 22.5%(식용)	0%(경작용) 27원/kg(식용)
건조 표고	288	144	1월1일~3월31일	110원/kg	369원/kg	
		144	10월1일~	25%		
건조 원추리	101	50	1월1일~4월30일	22.5%	58원/kg	
		51	9월1일~12월31일			
코코넛	10,000	3,000	1월1일~2월말	15%	736.4%	
		7,000	8월1일~12월31일	0.9원/kg		
빈랑				2월1일~5월31일	17.5%	810원/kg
파인애플	23,870	11,870	1월1일~3월31일	15%	173%	
		12,000	8월1일~12월31일	25%		
망고	12,755	7,000	1월1일~4월30일	25%	60%	
		5,755	10월1일~12월31일			
유자	4,300			1월1일~6월30일	25%	184%
건조 용안	330			1월1일~6월30일	15%	88원/kg

※ 녹용, 동양배, 팥, 액체유제품, 땅콩의 쿼터물량 수입이행 기간은 당년 12월 31일까지 연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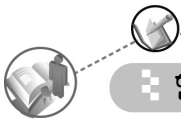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나. 동·식물검역에 의한 수입규제

■ 동물검역에 의한 규제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동물전염병 방지조례 제33조에 근거하여 한국은 아래 질병 발생지역으로 분류
 1.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2. 뉴캐슬 병(Newcastle disease)
 3.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4. 광견병(Rabies)
- 현재 대만은 구제수역사무국(OIE)에 가입된 국가이면서 OIE에서 선포한 광우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청정구역으로 선포한 국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자체 심사를 통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
- 한국은 광우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청정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만 당국은 자체심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한국산 소, 돼지, 닭, 오리 고기를 이용하여 제조한 가공식품의 경우 고온살균 처리된 캔류, 레토르트 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식물검역에 의한 규제

- 한국 농산물중 식물검역법에 의거 수입을 금지되고 있는 품목
 - 다음 식물의 생식물과 그 일부분(뿌리, 줄기, 가지, 잎, 꽃 등을 포함하나 종자제외)
 - * 쌀, 소맥 등
 - 살아있는 생강의 지하부
 - 아래 식물의 줄기, 잎, 눈, 괴근 및 과실 * 감자, 토마토
- 2005년 대만에 수출된 일본산 사과에서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견된 뒤, 2006년 2월부터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의 배, 복숭아, 사과 등의 과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 2006년 양국간 검역회담을 통하여 “한국산 복숭아 심식나방숙주 생과일 수입검역 작업 요점”에 의거 검역을 진행하고 대상과일 수입허용



-구체적 내용 별첨 1 “한국산 복숭아 심식나방숙주 생과일 수입검역작업 요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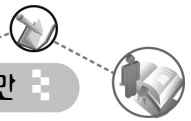
다. 고 관세율 및 기타 비용 부과에 의한 간접규제

■ 고 관세율 부과

- 한국산 주요 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 부과
 - 인삼 : 뿌리삼 및 홍삼정, 인삼정 및 분말제품 등 인삼성분 100%인 제품은 5% 이하의 저관세율을 적용하나 인삼성분 100%가 아닌 혼합제품은 30%의 고관세율을 적용
 - 삼계탕 : 계육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1kg당 NT\$32의 고율관세 적용하며, 계육 비율이 20% 미만의 경우 10%의 관세율을 적용함
 - 쌀 가공제품 : 쌀 성분이 20%를 넘을 경우 1kg당 NT\$59 고관세
 - 김치 : 28%
 - 유자차 : 26%
 - 라면 : 22%
 - 조미김 : 25%
 - 조미오징어 : 40%

■ 기타 부과비용

- 항만 서비스비(商港服務費) : 컨테이너별 수입금액 $\times 0.3/10,000$
- 수입 과징금 : 음료제품 20% + 특소세 15%
- 수입가격 가이드라인 : 수입이 많아지는 품목에 대해 수입가격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이드라인 이하 가격인 경우 신고가격을 무시하고 가이드라인 가격으로 관세 적용
- 원산지증명서 공증비용 : 신선제품의 경우 반드시 한국주재 대만 대표부의 공증을 필하게 되어 있으며, 공증비용은 건당 25,900원임
- 환경보호기금(基本環保處理費) : 용기 상품 수입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포장 재질에 따라 각기 달리 2개월 단위로 부과



재질CODE	용기 재질종류	세율 (NT\$/Kg)	상품종류(예시)	비용예시 (NT\$/CT당)
C101	캔	1.320	김치15kg/CAN	19.8
C301	플라스틱	15.60		
C304	플라스틱(pvc첨가)	23.160	김치 400g*12/CT	111.168
C401	유리	1.550	유자차 1kg*12/CT	18.60
C403	유리(pvc첨가)	1.550		
C700	은박지	3.930	레토르트삼계탕1kg*12/CT	4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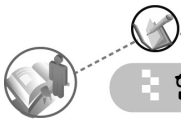
라. 행정적 조치에 의한 규제

■ 상품표시 규제

- 2007년 이후 영양성분, 유효기간 표기 등에 대한 강화된 규정적용
- 중국어 표기 : 수입품은 영문라벨도 불가하며, 반드시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 내에 성분, 중량 등의 표기도 모두 중문으로 표기해야 함
- 분리배출표시 : 국내와 다른 분리배출표기 및 환경보호마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분리배출 표시

1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2호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3호		Polyvinylchloride, PVC
4호		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5호		Polypropylene, PP
6호		Polystyrene, PS
7호		OTHERS



- 영양성분 표시 : 2004년 사용, 중국어 양식 발표 5개 항목(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합물, 나트륨)은 반드시 표기
- 영양성분 표시 변경(2007년 5월 24일 공고 / 2008년 1월 1일 시행 개시)
 - 영양표시 중 지방성분을 세분화하여,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표기
 - 트랜스지방은 0.3g 이하/100g(대만 기준)은 0으로 표기가능

營養表示	
每一分量	公克 (或毫升)
本包裝含	份
	每份
熱量	大卡
蛋白質	公克
脂肪	公克
飽和脂肪	公克
反式脂肪	公克
碳水化合物	公克
鈉	毫克
宣稱之營養素含量	
其他營養素含量	

- 유효기간 표기 준수사항(2007년) :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 1
 - 대만은 일반적인 연도사용이 세계적인 서기년도 대신 중화민국 개국연도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西元年/月/日로 표기하여야 함
 - 제조일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또한 우리나라 일반 표기법처럼 '유통기한', '보존기한' 표기는 인정하지 않음
- (1) 製造日期 : 如包裝上所示 (西元年/月/日)
有效日期 : 如包裝上所示 (西元年/月/日)
 - (2) 製造日期 : 2007.05.11 (西元年/月/日)
有效日期 : 2008.05.10 (西元年/月/日)
 - (3) 製造日期 : 2007年05月11日
有效日期 : 2008年05月10日



- 기타 주의사항(중문라벨 상 반드시 추가 표기)
 - 멀티백 라면(5팩 입) : “不准零售(분산 판매 불가)” 반드시 기재
 - 원산지 표기 : 產地 : 韓國
 - 주류 : 알콜농도 표기 및 경고(적색/중문) 표기
 - 증정품 : 贈品 표기
 - 유효기한 : 이중표기 불가 (예 : 냉장 1개월/냉동 1년)

■ 효능설명에 대해 엄격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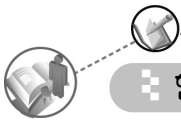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캡슐 및 환 형태로 제조된 건강식품은 약품이 아닌데도 위생국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를 획득하여야 수입가능
- 인삼제품의 경우 이미 검증된 인삼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효능에 대해서도 새로이 자료 제출 허가를 획득해야 하는 중 규제가 있음.

■ 증빙서류에 대한 자국공관의 인정요구

- 원산지 증명, 동식물 검역증 등 수입통관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에 대하여 한국주재 자국공관(대표부)의 공증을 요구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증가

■ 수입제품 원산지증명 인증기간 조정

- 2008년 1월 재정부 및 경제부 공고에 의해 수입품 원산지 인증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한정
- 이에 따라 수입품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고, 만약 2개월 이내에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나, 재연장은 불가함
- 과거 수입화물 원산지의 인증업무에 관한 기한 및 연장 횟수의 제한 조항이 없어 원산지 인증이 수차례 연장되거나 미결된 건수의 발생을 막기 위해 ‘수입품 원산지 인증기준’ 제4조를 수정, 수입품 원산지 인증을 수입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
- 일반화물 원산지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
 - (1)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 채굴한 광산 제품
 - (2)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 수확 채집한 식물제품



- (3)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 자라거나 양식된 살아있는 동물
- (4)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내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취득한 제품
- (5)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에서 수렵 혹은 어획하여 취득한 제품
- (6)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에 소속된 선박이 해양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기타 제품
혹은 이를 재료로 삼아 제조한 제품
- (7)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의 영해 바깥에서 취득한 해양 토양 혹은 지층에서
채굴한 제품
- (8)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내 수집된 재활용되어 원료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품 혹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 혹은 폐기물
- (9)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 내에서 취득된 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1항부터 8항
까지의 제품

■ 기타 규제

- 급행료 유무에 따라 통관절차가 간소화 되는 경향이 있으나 보편적인 사항은 아님

3. 진입장벽 피해사례

■ 수입쿼터 운용에 의한 피해

- 한국산 배는 대만에서 매우 인기 있는 품목으로 일본, 칠레 등과 경쟁하여도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만은 매년 9,800톤에 대하여 수입쿼터를
발급하고 쿼터 이외의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이 불가능한 고율관세를 부과
- 한국산은 매년 쿼터량의 80~90% 정도 수입되고 있어 쿼터제도가 해제된다면
추가적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동물검역의 의한 피해

- 현재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가로
지정되었으나 대만은 자국내 절차를 이유로 한국산 축산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
하고 있음



-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신선냉장 닭고기, 오리고기가 수입금지되어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대만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산 육류가공식품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불고기, 산적, 동그랑땡 등 냉동, 냉장육류제품
 - 소고기, 닭고기 다시다 등 육류함유 조림료 제품
 - 육류분말 등 시장개척이 용이한 많은 제품 수입금지

■ 식물검역에 의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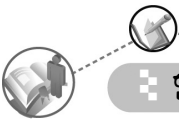
- “한국산 복숭아 심식나방숙주 생과일 수입검역작업 요점”에 의거 현재 한국산 조생종 사과 및 복숭아의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임
 - 현재 한국검역당국과 대만검역소간 문제해소를 위한 협상진행 중임

■ 고율관세 및 비용에 의한 피해

- 김치, 인삼제품, 유자차, 조미김, 조미오징어 등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하여 20%이상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고가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구입의욕 감소요인이 되고 있음

■ 중문라벨 표기사항

- 사소한 것이라도 기준사항에 맞지 않는 경우 직접 부두에 가서 정정한 라벨을 모두 재 부착해야만 통관가능
 - 냉장제품(김치)등의 경우 통관기간이 길어져 제품의 파손, 부패 가능
- 유자차의 경우 중문라벨 제작 시, 한국라벨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 제품특성이 ‘비타민C풍부’, ‘고섬유질’ 등의 문구로 인하여 통관이 안 된 사례가 있음
- 잦은 중문라벨 표기사항 변경으로 기존 사용중인 OEM생산 등의 제품 라벨이나 포장은 폐기하고 새로 제작할 수밖에 없어 비용이 가중됨
 - 유자차 : 2005년 특성 삭제 > 2007년 제조일, 유통기한 변경 > 원산지표시 > 2008년 트랜스지방 표기 등



■ 임의적 해석에 의한 규정적용

- 김치는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제품의 특성상 선적 전날 오후 컨테이너 작업을 하므로 제조일을 컨테이너 작업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으나, 대만 세관에서 3일 이전에 제조해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8년부터는 제조일을 선적 3일전으로 일방적으로 조정

■ 기타 : 대만은 WTO 회원국으로 일방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수입규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최근 전체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4. 해소방안 및 향후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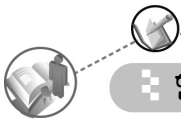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 대부분의 규제는 한국에만 대하여 일방적인 진입장벽을 두지는 않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조생종 사과와 복숭아에 대한 검역조건의 개정을 통하여 내년부터는 조생종 사과와 복숭아 수출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고율관세부과에 대하여 정부간 협상을 통해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

❖ 한국산 복숭아 심식나방숙주 생과일 수입검역작업 요점 ❖

1. 과수원 요건

- 가. 대만 수출용 사과(*Malus spp.*), 배(*Pyrus spp.*) 및 복숭아(*Prunus persica*) 재배농가는 해당 과수원에서 재배 기간중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C. niponensis*)에 대하여 방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내에 있는 대만 수출용 사과, 배 및 복숭아 재배농가가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병해충 방제력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게 방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소는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대만동식물방역검역국) 식물방역관에게 이 병해충 방제력을 제공한다.
- 다. 대만 수출용 배와 복숭아는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의 직경이 2.5cm 이하일 때부터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한다.
- 라. 국립식물검역소 및 BAPHIQ 식물방역관은 대만 수출 과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숭아심식나방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마.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다음 요령에 따라서 매년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고, 복숭아심식나방의 최종 발생일자와 알 및 유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월동을 위하여 유충이 과실로부터 탈출이 끝나는 일자(추정일자)를 즉시 국립식물검역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조사시기 : 9. 1~ 최종 발생일로 판단되는 기간까지
 - (2) 조사지역 : 중부·영남·호남지역의 각 2개소
 - (3) 조사방법 : 성 페로몬에 의한 예찰트랩조사
 - (가) 성 페로몬 화합물 : Z7-20-11Kt
 - (나) 트랩의 종류 : Delta trap 또는 Wing trap
 - (다) 조사 간격 : 2~3일
 - (라) 트랩설치 높이 : 지상에서 1.5m
 - (마) 설치 장소 : 기주 과실나무
- 바.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년 4.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과·배·복숭아 생과일 대만 수출 농가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선과장을 관할하고 있는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이하 “지·출장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선과장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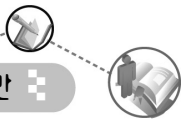
가. 대만 수출용 사과실을 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매년 4.30일 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과장을 관할하는 지·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 신청서가 제출 되면 지·출장소장은 당해 선과장이 제1조 바항과 제2조 나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만 수출 선과장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선과장인 경우에는 매년 선과장 코드번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미 부여된 선과장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나. 선과장 구비요건

- (1) 모든 과실은 수확시점부터 선과기간 동안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5월부터 10월중에는 선과장에 방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즉, 선과장의 창문 및 환기구에 직경 1.6mm 이하의 망 그리고 출입구는 에어커튼, 고무커튼 또는 기타 방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3) 선과장에는 과실 선별시설을 구비해야 하며, 병해충 이병과에 대하여 선별 및 검사에 필요한 조명장치와 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각 선과장은 국립식물검역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합격한 선과 전문가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혐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하여야 한다.
- (5) 각 선과장은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을 검출하기 위하여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예 : 황색 또는 청색끈끈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립식물 검역소는 동 트랩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때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과절차

- (1) 대만 수출용 과실을 저온 저장창고나 밀폐된 저장창고에 보관하는 때에는 국내 시판용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과실을 완벽하게 격리시켜야 한다.
- (2) 제1조 마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시점 이전에 선과장에 도착하는 배 및 복숭아 과실은 식물방역관의 입회하에 봉지에 씌운 채로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식물방역관은 봉지가 개봉, 파손되거나 제거된 과실을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3) 선과장은 매일 선과 및 포장작업이 시작되기 전후에 청결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5월부터 10월까지의 대만 수출용 선과작업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내수용 선과작업과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5) 식물방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 (6) 선별된 과실은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매일 폐기·소각하여야 한다.
 - (7) 선과장은 매년 5월부터 10월 이외의 기간동안 식물검역소의 승인을 받은 방충 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일몰 후 선과작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라. 선과장은 과수원의 복숭아심식나방 병해충 방제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방역관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마. 국립식물검역소는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 선과장을 제2조 가항에 의하여 등록하고 BAPHIQ 식물방역관이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선과장 목록(선과장 코드번호 포함)을 BAPHIQ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 시준중 신규로 등록한 선과장이 있는 경우 국립식물검역소는 갱신된 목록을 지체없이 BAPHIQ에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BAPHIQ는 선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에 식물방역관을 파견할 수 있다.

바. 포장재 요건

- (1) 수출용 포장재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코드번호가 표기되어야 하며, “대만수출용(To Taiwan)”이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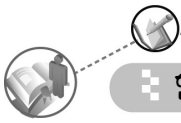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To Taiwan	
Name of Fruit	
Code No. of Packing House	

또는

To Taiwan	
Name of Fruit	
Name of Packing House	

- (2) 과실 포장재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6mm 이하의 망으로 차단하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 사. 선과장은 수출검사에 합격한 과실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과실 등의 내용물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까지 운송하는 때는 1.6mm 이하의 천막 또는 비닐로 완벽하게 덮어야 한다.
- (3) 이미 검사를 받은 과실을 보관하는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과실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만 식물방역관 현장검사 요건

매년 사과, 배, 복숭아 과수원의 병해충 방제, 선과장 그리고 수출검사 확인을 위한 BAPHIQ 식물방역관의 파견을 국립식물검역소가 적절한 시기에 공식 요청하여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초청 서신과 함께 제2조 가항의 선과장 목록을 BAPHIQ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4. 수출검사

- 가. 식물방역관은 제1조 마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시점 이전에 선과장에 도착하는 배 및 복숭아 과실의 봉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봉지가 개봉, 파손되거나 제거된 경우 당해 과실의 선과장 반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국립식물검역소는 복숭아심식나방의 최종 발생일자 및 사과에 대하여 수출검사 개시일자를 매년 사과 수출이 시작되기 전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식물방역관은 선과 과정중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된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도록 선과장을 감독하여야 한다.
- 라. 식물방역관은 포장 완료된 검사 롯트(Lot)에서 2% 이상의 상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상자내 모든 과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수량은 필요시 증가할 수 있다.
- 마. 수출검사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식물방역관은 당해 검사 롯트를 불합격 처리하고, 불합격 과실이 발견된 과수원에서 당해년도에 생산된 과실에 대하여 대만 수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 바. 수출검사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국립식물검역소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선과장에서 포장된 과실의 대만 수출을 중단시켜야 하며 이 상황을 BAPHIQ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출검사에 합격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당해 과실의 검사결과 복숭아심식나방과 BAPHIQ에 의해 지정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

선과장 코드번호 : 지 · 출장소 코드번호-승인번호,

검사일자 : 월, 일, 년”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 and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

Code No. of Packing House : ○ ○ - ○ ○,

Date of Inspection : month, day, year”

아. 검사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하여는 선적 전 재검사를 실시한 후 식물위생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수출될 수 있다.

5. 수송중 안전 요건

화물이 제3국이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BAPHIQ에서 규정한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을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나 지역에서 환적하기 위한 요건”에 따라서 경유하여야 한다.

6. 수입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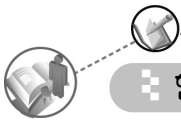
가. 수입검사 절차, 방법 및 검사빈도는 대만의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국립식물검역소가 부기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한 식물위생증명서는 이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국립식물검역소가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화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라. 도착지 검사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된다.

마. BAPHIQ는 수입검사 과정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립식물검역소에 즉시 통보한다. BAPHIQ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당해 화물에 대해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국립식물검역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수출중단 및 재개

- 가. 국립식물검역소는 BAPHIQ로부터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없이 당해 과실의 식물위생증명을 중단하여야 한다.
- 나. 중단 조치일 이전에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중단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적되면 대만으로 수출될 수 있다. 이러한 화물에 대해서는 BAPHIQ의 검사가 더 강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다면 제6조 라항, 마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 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출중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에 BAPHIQ가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라. 조사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립식물검역소는 BAPHIQ에 이 시스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BAPHIQ는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물방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한다.
- 마. 수출중단 조치는 국립식물검역소 통보 내용에 대하여 BAPHIQ의 검토와 동의 또는 이와 함께 BAPHIQ 식물방역관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이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통하여 검토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된다.
- 바. 국립식물검역소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지를 당해연도(1~12월)에 두 번째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의 모든 기주식물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을 지체없이 중단하고 제7조 가항 내지 제7조 마항을 이행하여야 한다.